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008
----------	------

제출년월일 : 2004. 6.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정이유

우리구 인터넷 정보포털시스템 및 사이버마을 홈페이지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부서 지정 및 역할 (안 제3조, 제7조)
- 나. 홈페이지 정보 및 게시자료 관리방법 (안 제5조, 제6조)
- 다. 사이버민원실 설치 운영·관리 (안 제10조~13조)
- 라.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마당 운영 및 홍보행사 (안 제14조~16조)
- 마.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및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안 제18조~19조)
- 바.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 (안 제20조~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4조 및 제16조
- 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8조, 제33조

나. 예산조치 : 예산확보사항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2) 제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게시판”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6.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전자정부 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7. “개인정보”라 함은 사망하였거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 의견수렴장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6.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
7. 국내·외에 구정 홍보
8. 기타 주민의 삶의 질 및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분야별 담당 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인터넷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또는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담당관·과·보건소·구의회 및 동사무소에서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정보화부서장은 담당관·과·보건소·구의회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정보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리성 도모를 위하여 각종 수수료 및 구 홈페이지에서 구매가능 물품의 구매대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 등의 개발·시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

제10조(사이버민원실 등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민원실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이하 “사이버 민원실 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사이버민원실 등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민원실 등은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및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사이버민원실 등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④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최신업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처리) ①구청장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처리대상민원에 대하여 처리대상 민원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발급민원은 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2조(민원처리공개) ①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진행 및 결과의 전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외에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민원상담 운영) ①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상담을 함에 있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답변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4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의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가명으로 접수된 의견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참여마당 운영) ①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과 관련된 항목으로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소외 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제18조(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1항의 전자우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아이디 등록을 승인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전자우편 아이디를 회수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9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국외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20조(개인정보 보호) ①구청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시스템안전대책) ①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